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72 발의연월일: 2023. 4. 21

발 의 자 : 김도읍 • 장동혁 • 김용판

김석기 • 박형수 • 양금희

조수진 • 구자근 • 유상범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이첩(안 제228조제3항).
- 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검찰성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안 제286조).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3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을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생 략)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	③
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	
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u>찰청</u> 에 이첩하여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의 사건송치)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	
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	
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u>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u> 의 사법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
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u>찰청</u>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	
다.	